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2025.01.01)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 분	년도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 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2024	39,810	36,850	34,020	32,470	30,920	30,920
	2025	40,650	37,630	34,740	33,160	31,580	31,58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2024	53,360	49,420	45,620	44,070	42,500	42,500
	2025	54,490	50,470	46,590	45,000	43,400	43,40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2024	66,360	61,480	56,760	55,210	53,640	53,640
	2025	67,770	62,780	57,960	56,380	54,780	54,780
10시간 이상 ~13시간 미만	2024	73,110	67,720	62,570	61,000	59,450	53,640
	2025	74,660	69,160	63,900	62,290	60,710	54,780
13시간 이상	2024	78,400	72,630	67,100	65,540	63,990	53,640
	2025	80,060	74,170	68,520	66,930	65,350	54,78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년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4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2025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24.12.31.)에 따름

※ “월 15일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시 3~5등급자는 20% 범위 내 월 한도액 추가 산정(1~2등급자는 10%)” 단,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 추가 산정하지 않음.

※ 제32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해당 월 급여 이용 중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의 급여비용(“미이용일 급여비용”)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한다.